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4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서동용・홍정민・고영인

양정숙 • 안민석 • 인재근

윤영덕 · 김정호 · 박홍근

허 영・양이원영・윤재갑

유정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,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반면,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7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립·공립 학교에"를 "학교에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다만,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호,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기능) ① <u>국립·공립 학교</u>	제32조(기능) ① <u>학교에</u>
<u>에</u>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	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
<u><단서 신설></u>	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제
	1호,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에
	대하여는 자문한다.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	<u><삭 제></u>
호의 사항(제7호 및 제8호의	
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	
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	
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	
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	
우에만 자문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